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전신청제 목적

- ☐ 일정 기간 운영하는 지원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시급한 분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디자인권 등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사전 신청』 제도란?

정부 위탁 사업 특성상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에 분쟁 현안이 시급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10~11월 이후 신청 건은 당해 연도에 과업을 종료할 수 없어 위탁 사업 정산 불가

2. 지원 개요

- ☐ 사업명: K-브랜드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사전신청제)
- ☐ 총괄기관·주관기관: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지원 유형

구분	지원 유형	사업비(건당 최대)
분쟁지원(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40백만 원

□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3. 지원 상세

가. 지원 내용 및 조건

(단위: 백만 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분쟁 대응 (개별)	상표무단 선점 대응 (사전신청제)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 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심판 소송 등 산행된 과제의 경우 추가 증거제출 기한 등 이후 과업 필요성과 연계된 해당국 제도 등 근거 제출 시 신청 가능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사전신청제
모집 기간	'25. 12. 22.(월)~'26. 1. 23.(금)
결과 통보	'26. 2. 5.(목) 예정
비고	• 사전신청제는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만 대상으로 실시 •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 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 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할 수 있으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 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 협업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사전신청제 해당 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	
	5.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 4]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입력
	3. 산출내역서 [붙임 4] 참조	○		
	4. 사업수행 제안서	○		시스템 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수행기관 지정: 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참고 사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5-'26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	--

5.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붙임1] 참조]

□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심사: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수행기관 심사: 수행기관 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수행기관 분류 기준	• 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수행 적합', '80점 미만: 집중 관리 대상'으로 구분 •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 관리 예정)
-----------------------	--

- 가산점: 신청기업이 선정심사 기준의 가점 대상에 해당하면,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관련 사항은 [붙임 1] 참고

□ 선정 결과 확인

- 선정 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 기업 협약 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참고 사항

- 해당 연도 내 단일 수행기관이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는 과제일 경우,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 시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 사항

- 사전신청제의 경우,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기간 연장 불가능

-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방식으로 진행, 기업과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신청 기업(협약체) 지원 제한 사유

- ①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③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 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⑤ 신청 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⑦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 ① 과제별 수행 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② 과제 수행 기간 중 동일 수행 인력의 보호원 지원사업 투입률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 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 가능)
-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⑦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해당 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 위탁 정산 비용은 경비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금액은 추후 별도 안내
-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 (수행인력 변경) 수행 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함*(단, 변경 사유 발생일이 협약 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 신청 기간 경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적합한 최신 양식 사용 필수

* 다운로드 경로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 사용할 것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또는 ‘전문기관 서비스’ > 자료실 > 양식 자료실)

다.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라.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사전신청제	02-2183-5895 02-2183-5892
행정	신청 및 선정 절차	02-2183-5892~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 관련	02-2183-5892~8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온라인 사업안내	• (일 정) 상시 게재 예정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https://youtu.be/wHAYUvaZEFA),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기업)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1 선정심사 기준

1 기업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참고1] 기업(협의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지식재산 보유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15점						
정성 (70점)	권리보호 필요성	영업활동 관련 상표 ·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	25점	25	21	17	13	9	탈락
	지원시기 적절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25점	25	21	17	13	9	
	지원 효과성	과업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 및 가능성	20점	20	17	14	11	8	해당 없음
정량 (-5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정성 (-15점)	과거 지원 관련성 (권리보호 유형만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5점	-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OR 국가 동일	-10점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AND 국가 모두 동일	-15점						
정량 (5점)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가점		5점	[참고2] 참조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평가결과 80점 이상, 선정					

참고1 기업(협업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정량 (30점)	기업(협업체) 규모	중소·중견 등 여부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지식재산 보유 건수*	지식재산 보유 건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등록2건 또는 등록1건+출원건 또는 출원3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 지식재산 보유 건수 : 상표·디자인에 한함.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

** 협업체의 경우, 협업체 참여기업별 평균값으로 산정(단, 협단체는 제외)

참고2 가점·감점 기준

구분	연번	항목	배점	비고
가점 (최대 5점)	1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제출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확인서 제출
	4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지원기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외)	5점	보호원 공문* 또는 보호원 제공 자료(연간보고서 등) 제출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등
	6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제출
	7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당해연도 기관 추천 공문 제출
	8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회원증 제출
	9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10	뿌리산업 확인서	2점	3년 이내 발급한 확인서
	11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제출 (총 기술개발기간 내 유효)
	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13	혁신조달기업	2점	정부부처 발급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출
	14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유효기간 내 확인서
	15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관련 증명서 제출
	16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17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감점 (최대 5점)	18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 조사 미응답 기업 * 과거 3년간(21~23년) 조사에 1회라도 미응답 시 감점

* 참고 3 하단 표에 기재된 기업에 한정

참고3 가점·감점 세부사항

구분	연번	항목	배점	세부사항
가점 (최대 5점)	1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발급기관) 인천 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충남 지식재산센터 (증빙서류)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유의사항) 인천/대전/충남 연계지원 기업은 증빙 불필요하며 자동 5점 부여 지자체 공고가 아닌 일반공고로 신청한 경우 RPC(인천, 충남), TP(대전)에서 추천서 받은 기업은 추천 공문 제출 시 5점 부여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증빙서류)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단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는 유효기간 없음)
	4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발급기관) 소부장 특화단지 산학협력단 등 (증빙서류) 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문의필요(02-6196-2041~3) (사업자등록증 상의 특화단지 주소, 업종 확인)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지원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증빙서류) 해당 지원사업(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외) 관련 보호원 공문* 또는 제공 자료(지원 결과물 등)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등
	6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발급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증빙서류)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7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제외) (증빙서류) 해당 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8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증빙서류) 회원증
	9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증빙서류)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 확인 공문 (유의사항) '가입증서의 만기일 확인' '법률자문 확인 공문의' 지식재산 공제 가입기업 및 '법률자문을 받음'이라는 내용 확인 필요

구분	연번	항목	배점	세부사항
	10	뿌리산업 확인서	2점	(발급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증빙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
	11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발급기관) 기업 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증빙서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3	혁신조달기업	2점	(발급기관) 각 정부부처 (증빙서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유의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0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서
	14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15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	2점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증빙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유의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발급된 확인서
	16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World Class300 기업 지정서 (유의사항) 월드클래스 졸업기업 제외
	17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발급기관) 지식재산처 (증빙서류)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발명진흥법' 제11조에 의거 발급된 인증서
감점 (최대 5점)	18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간('22~'24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관련기관 참고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인천·충남 지역지식재산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MOU 체결기관) 서울·경기북부·강원·충북·춘천·전북·군산·전남·광주·진주·대구·경남·부산
남부·울산·제주 지역지식재산센터, 경기·경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
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2 수행기관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성 (100점)	사업이해도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30점	30	26	22	18	14	해당 없음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40점	40	35	30	25	20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30점	30	26	22	18	14	
가점 (3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		3점	-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과제 당락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과제 수행적합 및 집중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만 진행

참고 사항	수행기관 심사점수 80점 미만(집중관리 대상)일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지원유형별 수행기관 평가 상세 기준]

○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도(단순 해외 출원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와 OSMU 개념에 기반한 IP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한 대응수단 및 권리회수전략에 대한 이해도
	도메인 분쟁기구별 제도 및 입증 요건 이해도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수단에 대한 이해도

○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상표,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내용, 사업화 현황, 벤치마킹 경쟁사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 권리회수전략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도메인 분쟁제도에 따른 도메인회수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와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보호 로드맵 및 권리화 전략에 대한 실현 가능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 및 권리회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도메인 분쟁해결기구별 제도에 맞는 도메인 회수 요건 충족 및 실현 가능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의 해소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